

국방보급목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Codification System

최 석 철* 서 호 일**
Choi, Seok-Cheol Seo, Ho-El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defense codification system for the items of defense supplies. We review other country's codification systems, their concept and trend of the systems for development, and then apply the ideas to our defense codification system.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defense codification system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one is the aspect of policy, the second one is the aspect of organization, and the last one is the aspect of operation. This paper will b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dification system, and defense logistics management.

주요기술용어: Defense codification system(국방보급목록제도), NCB(National Codification Bureau): 국가부호국, NIIN(NCB Item Identification Number): 국가품목식별 부호

1. 서 론

목록의 중요성은 군수활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대의 무기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고도화 정밀화 되어감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방예산의 절감에 대응한 효율적인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목록제도를 연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목록제도를 분석하여 목록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목록업무의 발전을 통하

여 군수업무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목록제도의 일반적 고찰

2.1 목록제도의 개요

2.1.1. 목록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목록(Catalog)은 “품목에 관한 총괄적인 열거로서 체계적으로 나열되고 흔히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출판물이며 품목에 관한 서술적인 명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8]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관리 대상을 군수품으로 한정하여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방보급목록제도이다.

국방보급목록제도라 함은 “국방보급품을 각 품목에 유일한 품목임을 나타내게 하는 식별자료와 그

*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교수

**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품목을 군수체계 내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발간 배포하기 위한 조직과 체계⁽³⁾를 말한다.

이러한 국방보급목록제도의 목적은 효율적인 보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단일 보급언어제정, 보급품목에 관한 정보제공, 보급원의 기록, 보급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활동을 기록,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⁴⁾.

2.2 목록제도의 기능

2.2.1 품목식별 및 관리정보의 제공

현재 우리 나라와 우방국이 보급품으로 채택하고 있는 1,200만 품목에 대한 식별을 위해서는 각 품목에 대한 식별자료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목록제도는 각종 교범을 통해서 품목식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품목을 식별하게 해준다.

또한 소요결정에서 처리에 이르는 물자관리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불출단위, 단가, 포장단위, 위험성 여부, 취급상 주의점, 저장기간, 수송방법, 폐기방법, 물품의 성분, 적용장비, 호환 및 대체가능품 등)를 각종 보급목록을 통해 제공해 준다⁽⁵⁾.

2.2.2 적절한 재고관리

목록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계화된 목록절차에 의해서 동일품목에 단일 품명 및 유일한 재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록은 일면 재고고갈 및 초과품 발생을 방지하고, 이중저장 방지, 호환 품목 및 대체품목의 상호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재고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2.3 물자예산의 절약

목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이중재고에 의한 관리비용 증대, 폐기품목을 모르는 경우 발생하는 관리비용 증대, 적용장비가 2개 이상 인줄 모르고 하나의 적용장비가 폐기될 때 유효품목을 값싸게 매각 폐기처분 하는데 따르는 손실, 생산업체가 2개 이상인줄 모르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고가로 구매할 가능성 등이 있다.

2.2.4 군수품의 과학적 관리 및 통제

보급목록의 작성 발간은 대량의 정보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전산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목록제도는 전산화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 및 제공함으로써 군수품을 과학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2.2.5 전시군수지원 능력 향상

목록제도를 활용하면 각 기관별, 품목별 총체적인 보유현황 파악이 용이하므로 소요량 결정, 기관간 물품의 전용 등 전시 보급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적용장비 및 호환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시 재고고갈시 긴급구매에 의존하지 않고 타 장비의 부품, 호환 대체품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조달 시에도 공급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획득 및 물자동원이 용이하게 되며, 국제적으로는 재고번호만으로도 우방국에 즉각적인 지원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3. 세계의 주요 목록제도 발전추세

3.1 CALS화 및 데이터 교환 표준제정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CALS(Continuous Acqui-

sition and Life cycle Support)의 영향으로 인하여 목록 체계의 자료교환, 발간, 목록화 등 제반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세계적인 목록자료의 공유를 위한 목록체계에서의 CALS개념 도입은 미국을 시점으로 나토 및 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이 나토목록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목록체계 자료교환 표준은 국방 CALS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각종 기관이나 업체와의 자료의 공유 및 교환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미국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나토목록체계에서는 미국의 자료교환 표준에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자료 교환 표준을 미국의 CALS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제77차 나토목록회의(2000.5.8-11)에서는 대부분의 의제가 목록의 CALS표준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을 미국의 목록체계 관련된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STEP(Standard for Exchange Product data), RAMP(Rapid Acquisition of Manufactured Parts)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자국 목록체계의 CALS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나토동맹국과는 달리 자국 나름의 목록체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글로벌한 체계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STEP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미국 즉, 나토의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체계는 다르지만 모든 자료의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체계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료공유 및 교환 표준을 나토의 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목록자료의 표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⁰⁾.

3.2 목록체계의 표준화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해서는 자료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일한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나토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표준의 중심이 되는 체계는 미국의 목록체계이며 이를 근간으로 나토, 태평양지역, 그리고 나토동맹국가, 나토 준회원국가에 대한 체계의 표준화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냉전체계의 종식 이후 새로이 군수품의 교역대상이 되는 국가나 아직 목록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목록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목록체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토에서는 이를 BASELOG 사업으로 명명하여 NAMSA(NATO Maintenance & Supply Agency)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데이터의 표준화 뿐 아니라 체계의 표준화를 통하여 목록자료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¹⁾.

3.3 목록제도의 확대적용

목록업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수품을 위한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무기체계획득 분야에 있어서 아웃소싱의 형태가 증가되고 또한 민·군 겸용 기술의 확대, 민·군 규격의 통일화, 군사규격의 폐지 및 민간 규격의 적용 등의 영향으로 군수품과 관련된 영역과 민간분야의 영역구별이 모호해지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목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목록의 국가목록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목록제도를 196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1995년에 타 정부기관과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국가목록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국가목록체계를 1989년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료의 공유체계가 구성되면서 국

가목록체계를 구성하는 국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직 목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는 최초 설계시부터 국가목록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¹²⁾.

3.4 발간업무의 현대화

기존의 목록자료 발간 형태는 대부분 하드카피 형태나 마이크로피쉬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메모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하드카피 형태의 목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말경에는 목록체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록의 발간업무를 기존의 하드카피 형태에서 CD형태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발간자료의 사용 면에서도 오프라인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아울러 온라인 형태로 직접적으로 DB에 접속하여 제반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나토연맹 등 대부분의 목록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나 단체에서는 웹상에서 열람 가능한 목록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일박스 운영, 각종 검색목록운영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전세계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국방목록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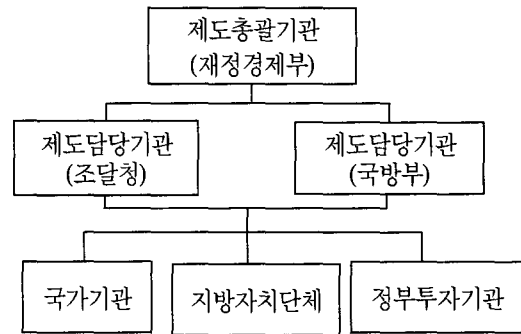
4.1 정책측면

4.1.1 목록관련 법, 규정, 지침

우리나라의 목록관련 법령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주된 법령은 1995년 이전에 적용하던 법률인 물품관리법과 다른 하나는 1995년에 제정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95년 이전 국가물품분류제도는 물품관리법에 의해 운

영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물품분류제도와 조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방보급목록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 물품목록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록체계는 조달본부와 조달청이 동일한 나토의 목록체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군수품은 국방부에서, 기타 물품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아직도 국가목록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이를 2001년으로 연기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물품분류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법률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목록관련기관 구성도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급목록제도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국방부 내의 규정은 1999년 국방부 내부 각종 군수 및 획득관련 규정이 국방획득관리규정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군수품 목록화 규정은 폐지되고, 국방획득관리규정의 제40조에 목록화라는 명칭으로 3면만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목록화 관련된 세부 시행 지침은 조달본부 내규의 목록실 관련 사항이 목록업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대외기관에까지 영향

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⁴⁾.

4.1.2 관련 체계와의 연계성

국방보급목록체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체계는 국방형상관리체계와 원가관리체계, 규격관리체계 그리고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관리체계이다. 이들 각 체계 내에 포함된 요소는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우선 목록관리체계와 규격 및 형상관리체계의 정보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목록관리체계에서는 186개의 정보항목을 관리하는데 이중 75개는 규격 및 형상관리체계와 중복되어 있는 자료이다.

자료의 상호 공유를 위해서는 각종 디지털 자료의 표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 품질관리소에서 조달본부와의 자료 표준에 대하여 고려하여 체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표준에 따르는 것이라곤 할 수 없다. 즉 국방부 내에서 각종 디지털 자료의 공유를 위한 표준이 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마다 적용하는 표준이 차이가 있다.

둘째, 각군의 품목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이다. 현재 품목관리 체계는 3군이 각기 다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달본부 목록체계와의 상호 업무 절차는 제반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각군 및 조달본부가 각기 다른 목록 및 규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체계상호간의 데이터의 연동이나 상호 교환이 제한되고 제반 목록화를 위한 작업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조달본부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규격관리체계와 원가관리체계와의 연동성이다. 현재 조달정보 체계가 구축되면서 일부에 한해서는 연동이 되고 있으나, 자료의 공유 측면에서는 아직도 제한되고 있다. 규격관리체계는 조달본부 뿐 아니라, ADD, 국방품질관리소, 각군의 규격이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

으로 이를 목록체계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체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체계를 단일화하여야 하나 현재는 각각의 체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연동성이 제한되어 있다.

원가관리체계와의 연동성에 있어서도 현재 재고 번호가 부여된 품목에 한하여 원가내용이 수록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조달품목이나 미목록화 품목의 조달 경우 각종 정보가 목록체계에 수록되지 않고 있어서 차기 계약이나 조달에 있어서 역사자료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4.1.3 국가목록제도와의 관계

가. 목록관련 조직 및 대상품목

국가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고 품목에 대한 목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조달청 예하 물자 비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비축국에서 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관리과, 물품목록과의 평시조직과 국가목록제도 개발사업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인 물품목록정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물품목록과이며 인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목록업무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물품목록화 대상 품목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민간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대상이 되며, 대부분 완성품 위주로 되어있다. 현재 대상물품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 보유기관의 보유물품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유추해 볼 때 물품현황은 560,000 여 품목이다.

또한 국가목록의 주요 대상이 민간분야와 유사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체계의 운영 면이나 대상품목의 선정 분야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 목록화 절차와 방법

국내 물품분류제도는 1995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목록제도는 나토의 목록체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록화 도구를 이용하고 제반 목록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목록화 요청, 군급분류, 지정품명 부여, 참조자료 작성, NIIN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발간에 이르기까지 국방보급목록제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즉,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체계 면에서 국방목록체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상품목과 적용기관 면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별도의 목록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자료의 공유와 통합, 그리고 전 국가적인 자료 공유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⁹⁾.

4.2 조직측면

4.2.1 국방보급목록제도 관련 조직 및 기능

국방부조달본부 예하 목록실에서 국방보급목록제도 운영 및 각종 목록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목록실은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록1,2,3과 및 목록체계과이다.

각군의 군수사에는 신규보급품에 대한 목록자료 제출 및 목록화 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이 있는데 육군의 경우는 품목관리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와 겹직을 하고 있으며 해, 공군의 경우는 3~4명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목록화 대상품목 색출 및 목록화 요청 또는 종합품목기록철에 수록된 자군 품목 확인 정도의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¹⁰⁾.

연구개발기관이나 국방품질관리소에서는 목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목록화 요청, 시제형식번호 부여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요원이나 품목의 형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에 의하여 목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실무자에 대한 목록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목록업무 수행에 비효율성과 부정확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4.3 운영측면

4.3.1 목록화 요청

국내 목록화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분야는 목록조직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목록화 절차는 각군 군수사, 국직기관, 조달본부 규격실 등에서 목록화 요청을 의뢰하면 이를 바탕으로 품명, 중복여부, 군급분류, 특성자료입력, NIIN부여 등을 거쳐 최종 목록화 및 재고번호가 부여되고, 목록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게 된다. 현재 목록화 과정에 있어서 취약한 분야는 첫째, 정보화 및 자동화관련 분야와 조직관련 분야이다.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제작성하는 이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료의 공유와 재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조직 면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이나 국외도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발이나 도입 초기에 목록화에 관한 자료가 종합되지 못하고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목록화를 위한 재작업을 하게 됨으로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사업 초기에 목록업무를 담당할 요원의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초기의 목록화는 곤란한 실정이다. 사업관리의 중요한 요소는 제반 업무를 동시공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데 있는데 반해 현재 규정된 목록화 절차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록업무를 이루어

집으로써, 비효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운영 및 폐기단계에 있어서 목록화 요청 절차가 자동화되어있지 못하고 대부분이 수작업 형태로 해당부대에서 각군 군수지원 계통으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단계의 목록화 업무는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의 부족으로 군수지원 부대에서 목록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제한된다. 궁극적으로 운영 단계에서의 목록업무는 각군의 군수사에서 종결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3.2 목록화 지원 시기 및 절차

목록화 요청의 시기는 요청하는 대상 품목의 형태, 체계의 도입 방식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의 경우 먼저 시제품이 생산되면 이에 따른 시제형식 번호 부여요청을 하게 되며, 형식번호를 부여받은 후부터는 장비의 모델명을 시제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체계에 대한 목록화 요청은 개발이 완료된 후 양산단계 이전에 실시하고 있다. 기술도입 생산의 경우는 외국의 목록자료를 도입하여 이를 종합품목기록철에 수록하고, 해당국가에 사용자 등록요청을 함으로서 목록화가 종결됨에 따라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양산단계에서 목록화 요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 직구매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목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전 목록화 지원의 개념보다는 장비 인도 단계에서의 목록화 지원형태를 취하고 있다²⁾.

궁극적으로 목록화 요청 시기가 양산이나 배치단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각 품목에 대한 검색, 제반 자료 입력, 재고번호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목록화하여 지원하는 시기는 장비가 배치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목록화 절차상에서도 해당 기관과 목록실 위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배치 운용단계에서의 목

록화 요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목록화 단계를 연구개발단계, 조달 및 생산단계, 배치 및 운용단계, 폐기단계로 구분하면, 배치 및 운용단계에 있어서의 목록화 절차에 대한 교육, 활용,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의 운용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목록화 요청서의 작성일 것이다. 일부 체계의 연구개발의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체계의 개발이나 도입 종료 후 목록화 요청서를 개발 또는 조달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미 디지털화 되어있는 자료를 재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

4.3.3 목록체계 활용

현재 목록체계의 활용은 조달본부 목록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화되어 있다. 즉 실질적인 목록의 활용 면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업무체계 중 목록화 절차나 운영절차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먼저 목록화 절차 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목록화 업무가 사용자 위주가 아닌 지원자 위주로 되어 있다. 업무의 프로세스가 연구개발이나 국외도입 등이 초기부터 목록화 지원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 최종 양산이나 도입 직전에 목록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적기에 목록화 지원이 곤란하며, 사업 중반에 실시하는 제반 시제형식번호 부여 업무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시공학적인 업무의 진행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자동화 정보체계 내에 단순히 목록화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공유를 통한 자동적인 목록화 요청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하여 제반 데이터를 중복되게 작성해야하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운영 면에 있어서도 목록화 관련된 규정의 세부 지침이 조달본부 내부에서 작성하여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국방획득관리 규정에는 골격만 되는 목록화 관련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목록업무의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생산업체에서 목록화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목록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 국방보급목록제도 개선방안

5.1 정책측면

5.1.1 목록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째, 업무담당기관 면에서 목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국방부를 제도총괄기관으로 조달본부를 제도담당기관으로 개정하고, 모든 목록관련 업무를 국방부에서 관할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목록화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을 하고, 기관의 성격상 민간기업에 유사하고 그 물품의 성질도 기관 고유의 물품이 많아 정부기관의 물품과는 차이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목록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목록화 대상품목 면에서는 군수품의 경우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품목이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품목은 대부분 완성품이나 자재, 기초재료 등이므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상품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내용을 토대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국방획득관리 규정

현행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목록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목록화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첫째, 목록화 관련 정책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목록체계의 운영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목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아울러 목록관련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된 정부 및 군 조직과의 목록업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업무의 흐름이나 통제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초기 국가목록체계의 운영에 따르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목록의 발간업무분야도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명확하게 언급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개 또는 비공개 목록자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군 및 민간 분야의 정보 공개범위, 사용자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여 수록하고, 목록화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관계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현행 각부서의 책임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제반 운영교범 등 목록도구의 생산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런 제반 내용을 수록하여 이를 별도의 물품목록화규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명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부록 형태로 구성하여 본문에는 기본 정책 분야만 언급을 하고, 부록에 세부적

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1.2 국가목록제도의 운영

우리나라의 국방보급목록체계와 국가목록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목록체계를 구성하여 국가목록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목록체계는 두 체계 모두 나토의 목록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전산체계 또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방보급목록체계를 재구성하기보다는 별도의 목록 체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무기체계획득 분야에 있어서 아웃소싱의 형태가 증가되고 또한 민·군 겸용기술의 확대, 민·군 규격의 통일화, 군사규격의 폐지 및 민간 규격의 적용 등의 영향으로 군수품과 관련된 영역과 민간분야의 영역구별이 모호해지고있는 시점에서 동일한 체계를 운용하면서 이를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 군간의 목록자료의 공유 및 교환, 제반 기초투자의 중복 방지와 이를 통한 예산의 절감 측면 즉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목록체계를 국가목록체 계로 단일화 해야한다.

아울러 국가를 대표하는 목록국은 조달본부 목록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점진적으로 국방부 부처조직으로 개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물품에 대한 목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목록업무를 담당할 1개의 분과를 조달청에 운영하는 형태로 체계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다.

5.1.3 국방분야 유사 체계의 통합운영

가. 데이터 관점에서의 통합

1개 품목이 신규로 규격이 제정되면, 각종 규격자료를 근거로 목록이 작성되고, 또한 제정된 규격에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규격을 변경관리함과 동시에 목록자료에 포함된 규격항목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도록 체계를 통합한다.

최초 규격작성기관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규격작성시 표준화된 규격 및 목록제작시스템에 의거 표준화 및 디지털화된 규격 및 목록정보를 조달본부 및 품질관리소에서 인수받아 조달본부 및 국방품질관리소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달본부와 품질관리소에 구축 운영된 군수품의 목록 및 규격자료는 탄약목록규격DB, 물자목록규격DB, 장비목록규격DB로 구분되어 군수지원단계의 제반체계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5.1.4 타 체계와의 연계성 향상

목록체계와 현재 연동이 중요시되는 체계는 국방형상관리 정보체계, 무기체계 연구개발관련 체계, 계약관련 체계, 원가관련 체계, 규격관리체계, 그리고 각군의 자원관리체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목록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187항목 중 대부분의 자료는 관련된 체계에서 산출된 것이며, 외국 품목의 경우는 외국의 목록자료를 사용자 등록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목록체계 내에 기록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연관된 각 체계간의 연동성을 향상 시켜서 관련된 체계 내의 데이터 변동과 연계하여 목록체계의 자료가 실시간 대에 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목록화 요청 또한 각 부서간의 자료교환의 표준에 의하여 자동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방 CALS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2 조직측면

5.2.1 목록관련 조직의 개편

현재 목록관련 조직은 임무중심위주의 조직이 아

닌 관리위주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무위주의 매트릭스 조직화하여야 한다. 즉 각 사업관련 부서와 군수의 기능인 소요, 조달, 보급, 정비 및 처리, 품질 및 기술의 기능관리조직을 매트릭스 조직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나 국외도입 등 획득방법에 상관없이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목록전문가에 의해서 목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종합군수지원 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사업관리단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관리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원편성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며, 인원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목록전문요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목록화 지원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조직과 아울러 각 군 군수사 조직 및 정부기관의 조직도 보완하여야 한다. 각군 군수사의 경우 목록업무를 담당할 전담 요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군별 6명 정도의 목록업무 담당관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경우는 대부분을 조달청에 국가기관의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목록업무를 위해서 1개 과 규모의 목록업무 담당기관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2.2 목록관련 요원의 전문성 향상

목록화 작업은 물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 능력, 보급관리 전반에 걸쳐 수록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군수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적인 전문 외래어 및 외국어를 해독할 수 있는 어학 능력 및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능력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목록요원은 이공계열을 전공한 기술직이 필요하며,

군수분야에 관한 경험이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인적 요소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의 기술직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소한 이공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최소 70%는 상회해야하며, 학력 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확대이다. 우선 국내 군수관련 업무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목록관련 보직 인원의 군수관련 교육을 년차별로 의무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국방대학교 사업관리 과정, 그리고 육군의 종합군수학교 군수관리 과정 등이 있다. 아울러 목록요원의 교육을 위한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해외교육 및 연수기회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목록체계는 미국과 나토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외목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목록요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나토목록체계에 대한 연수 또는 영국, 프랑스 등 나토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운영실태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목록체계의 발전추세의 사전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목록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는 개인의 목록업무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3 운영측면

5.3.1 목록화 시기 및 절차의 개선

가. 목록화 절차

우리나라의 목록화 절차는 순차적인 요소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이중 작업의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록화 절차를 단순화하여 이를 동시공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군수품의 표준화 업무를 수행시에 목록 및 규격, 형상업무를 동시에 설계 및 처리해야 한다. 군수품의 표준화 활동에는 제품표준화, 기술방법의 표준화, 기본 의사전달의 표준화가 동시에 처리되므로 1개 품목을 중심으로 목록화 및 규격화 그리고 형상관리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체계를 재구성하여서 목록화 업무의 절차를 유사 업무와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 설계된 목록, 규격, 형상정보를 동시에 수집, 분석, 가공 및 생산, 존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형상업무 수행시 목록업무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여야 한다. 1개 품목에 대한 기술검토 및 규격검토가 완료된 후 규격이 변경되면 반드시 규격번호, 도면번호를 재부여해야 하며, 이와 연속적으로 관련 목록정보의 변경 또는 신규 목록화 여부를 동시에 검토 및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형상관리 업무 수행시 참조자료, 표준화자료, 수송자료, 특성자료 등 기술변경에 의거 규격 및 형상정보 내용의 변경을 요할 경우 관련정보를 목록관리기관에 제공하여 동시에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또한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목록정보 구축시 목록 및 규격관리 업무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여야 한다.

즉 1개 품목이 신규로 개발되거나 성능이 개량되면 1개 품목과 관련된 식별자료, 관리자료, 품목특성자료, 외형자료를 동시에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최초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양식상에 필요한 정보항목수 중에서 58개(61%)의 항목이 규격자료에서 수집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규격과 목록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표 1] 목록화 항목에 포함된 규격정보항목 내역

구분	목록화 소요정보항목 수	목록에 포함된 규격/형상정보 항목수	비고(5)
식별 자료	• 28개 항목(9)	• 6개 항목	• 21
참조 자료	• 16개 항목(10)	• 13개 항목(5)	• 81(50)
표준화 자료	• 8개 항목(9)	• 4개 항목(3)	• 50(33)
수송 자료	• 16개 항목(9)	• 13개 항목(9)	• 81(100)
관리 자료	• 29개항목 (23)	• 6개 항목(6)	• 21(26)
특성 자료	• 44개 항목(35)	• 33개항목(35)	• 75(100)
계	• 186개 항목(95)	• 75개항목(35)	• 40(61)

넷째, 배치 및 운용단계, 폐기단계 목록화 절차의 단순화이다.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 단계는 연구개발 단계, 조달 및 생산단계, 배치 및 운용단계, 폐기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연구개발단계 및 조달, 생산 단계의 목록화는 연구개발부서나 조달본부 및 각군 군수사에서 주관하므로 문서에 의한 방법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의한 방법이든지 간에 목록화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록자료의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발생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목록업무를 비전문 부서인 야전에서 목록화 요구는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목록화 요구를 수작업 문서로서 군수지원계통으로 함으로써 행정소요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목록화 된 품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목록화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보급목록 체계에 수록된 목록화 품목 내용을 CD-ROM으로 수

록하여 사단급까지 배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품목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편성부대에서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운영 단계에서의 목록화는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편성부대에서 국방보급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조회결과 취급목록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목록화 요청서가 작성되어 차상급 군수지원 제대로 발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목록화 시기의 개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나 직구매의 경우 현재 목록화를 지원하는 시기는 개발완료시점이나 양산이전 단계 그리고 직구매의 경우 장비도입 직전에 실시하거나 도입후 운영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제반 기술자료나 기술교범 등이 이미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체계에 대한 내용만이 목록화를 실시할 뿐 구성품이나 부분품에 대한 목록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목록화 지원 시기는 연구개발이나 직구매의 사업시행 초기부터 시작하여 개발완료 시점이나 직구매하여 야전배치시에 목록화를 완료해야 한다.

먼저 연구개발 경우의 목록화 지원시기의 개선방안이다. 우선 연구개발 프로세서에서 개념형성이 완료된 후 탐색개발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체계의 구성품에 대한 요소가 대부분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목록화를 지원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존의 체계개발 완료후 시점에서 탐색개발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목록관련 요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상으로는 제한이 따르며 위에서 제시한 사업관리단 조

직을 활용하거나 연구개발 부서와 조달본부 목록요원을 가상의 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조직의 운영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K-1전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체계를 구성하는 총구성품수는 39,575 품목이며, 이들 중에서 취급품목 수는 14,412품목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목록화된 품목은 7,829품목(54%)에 불과하며, 조달실적품목은 10,678 품목(74%)나 되어서 취급품목 대비46%, 그리고 조달 실적품목 대비 32%나 미목록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직구매 경우의 목록화 지원시기의 개선이다. 직구매 품목의 목록화를 위한 목록자료 획득에 관해서는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목록 자료를 판매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가장 문제시되는 조항은 목록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목록화를 실시하는 시기는 전력화 단계에서 목록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목록자료를 운영초기단계에서는 활용이 제한되고 미목록화된 상태로 군수품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안요구서를 공고할 때에 제안서에 수록할 내용 중 목록화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고, 목록화 지원 시기도 계약완료시점부터 시작하여 전력화 단계 전에 사용자 등록 또는 신규목록화를 통하여 운영단계에서는 목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도입 생산의 경우 목록화 지원시기이다. 우리 나라의 무기체계 획득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술도입 생산일 것이다. 기술도입 생산의 경우 목록화 지원 시기는 현재 최대한 양산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양산이전에 목록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도 기술도입 생산의 경우 장비 획득을 위한 계약은 국내

업체와 이루어지고 제반 목록화를 위한 자료는 국내 업체가 기술지원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재차 목록화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목록화 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즉, 기술지원 국가의 NCB에서 우리나라 목록실로 자료를 송부하여 보급품은 이와 동시에 사용자 등록을 실시하고, 국산화 품목은 심의를 거쳐 재고번호 부여 또는 사용자 등록을 하여 사용하면 무기체계의 야전배치 전에 목록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5.3.2 목록자료 발간 및 활용의 개선

현재 목록발간 내용은 현재의 조달본부 목록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4장의 CD-ROM에 수록하여 각군 군수사로 발송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사단급 부대까지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전부대 보급실무자에게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

목록자료 발간방법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록자료의 구분 발간이다. 즉 목록자료를 전문가용과 보급실무자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목록을 제정 및 개정하고 폐기하는 등의 전문 목록업무와 관련된 조달본부 및 각군 군수사에서는 전문 목록관리에 필요한 전문가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전 실무부대에서는 야전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방 보급목록과 관련된 내용만을 수록한 보급실무자용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로는 발간자료의 활용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군 및 조달본부의 품목관리체계의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최신의 목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각군의 보급지원체계를 분기단위로 발간되어 배포되는 목록으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

록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전군에 동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화해야 한다.

5.3.3 목록업무의 간소화

현재 진행중이거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군 규격의 통일화 사업이나 군사규격의 완하, 민군겸용 기술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군사규격을 적용받는 세부적인 완전서술형태의 목록자료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 또한 한번 목록화된 품목의 경우 운영 및 폐기단계의 목록자료 최신화가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태된 품목에 대한 목록자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종합품목기록철을 각군의 품목관리철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품목을 과감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달청의 현재 진행중에 있는 품목 목록화 자료와도 연계하여 동일품목에 대한 이중 재고번호 부여나 이중관리 재고번호 등을 색출하여 이를 정리하여 관리자료를 경량화 하여야 한다. 또한 성능규격의 확대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목록요소를 색출하여 과감히 삭제하고, 성능규격을 적용받는 품목은 완성품 위주로 목록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5.3.4 목록자료의 국제교역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11개의 국가나 단체와 목록자료 교환에 관한 쌍무협정을 맺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 목록체계와도 목록자료의 상호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쌍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간의 목록자료 교환의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목록자료의 국제교역 확대는 목록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얻는 이점 외에도 경제적인 이점도 함께 달성할 수가 있다. 교역의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정확성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방 생산품목이나 원 생산국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국내 생산하는 품목이 다수가 있으며 이러한 품목에 국가번호를 '37'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수 없는 상태의 품목이다. 이러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무기체계를 타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목록을 지원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예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목록자료의 교역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번호 부여 체계를 재고려 해야 한다.

5.3.5 수익사업의 운영

미국이나 나토의 경우는 목록업무의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자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은 각종 목록자료를 유상 판매하고 있으며, 나토의 경우도 목록자료의 유상 판매, BASE-LOG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방분야에서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달청에서도 국가 공공기관이나 투자기관에 대한 목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 또한 이에 대한 언급은 비용에 대한 내용만이 상호 협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수익창출을 위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현재 방산장비의 수출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목록지원을 통한 제반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목록체계가 구성되면 투자기관에 대한 목록지원을 통한 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목록체계의 구성을 바탕으로 목록자료의 지원과 목록체계의 구축지원, 그리고 목록화 지원을 통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사업의 대상을 국내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제무대로 확대하여야 한다.

6. 결 론

목록제도는 무기체계와 국가 전체의 제반 물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조달, 생산, 계약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물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론에서 제시한 목록제도의 개선방안은 현재 세계 주요 목록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발전추세를 토대로 국내 국방보급목록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를 도출하여 목록정책측면, 목록조직측면, 목록체계 운영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방안은 당장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된 법령의 개선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 즉, 국가목록체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방분야와 기타 공공분야에 있어서 정보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반 각 분야에 대한 통합이나 자료의 공유는 부처별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계 주요 목록제도의 발전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목록제도도 세계무대에서 상호 자료의 교환과 아울러 국내 모든 물품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과 조직, 그리고 체계운영의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목록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방부, 「국방부훈령 제651호: 국방획득 관리규정」, 1999.12.31.
2. 국방부, 「국방 군수정보체계 업무기술서」, 1996. 12.16.
3. 국방부조달본부, 「국방보급목록」, 1998.
4. 국방부조달본부, 「조달본부내규」, 1998.
5. _____,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 목록관리시스템」, 1999.11.
6. 국방품질관리소, 「국과연CITIS, 조달본부 GITIS 및 형상관리 정보체계의 기능 비교검토」, 2000.3.
7. 국방대학원, 「CALS개념에 의한 민.관.군 기술정보교류 Network 구축에 관한 연구」, 1998.3.
8. KIDA, 국방보급목록제도의 수립, 1981, p.1
9. 강문호, 「국가물품목록제도 확립에 관한 연구」, 1998.
10. AC135, 「제79차 나토목록회의 자료」, AC135Web, 2000.5.
11. _____, 「BASELOG Brochure」, February.2000.
12. _____, 「The NATO Codification System: Bridge to Global Logistics Knowledge」, 1999.